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800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800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146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변론종결 2022. 11. 23.

판결선고 2022. 12. 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146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8. 12. 중순경 체결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의 사업자명의변경계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69,369,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3, 14행, 3면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번호 5)에 기재되었다.」 ○ 제1심판결 3면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행의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행의 “을 제2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을 제2내지 4,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행(3.나. ⑥항 이하)부터 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⑥ 설령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256조 제1항), 피고 C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8. 12. 4. 중지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2019. 10.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상, 사업자 명의의 변경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잔여 채권액인 169,369,022원을 추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추심이 방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변경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C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사업자명의변경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김수정, 판사 정하정